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08호 2016. 9.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3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2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재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247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25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2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⑥항 및 제⑦항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6. 9. 19.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붙임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도로명	부여사유	유사도로명 및 동일도 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역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제 원(m)		기초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제 원(m)		기초번호				
						길이	폭	시작	끝	간격(m)			길이	폭	시작	끝	간격(m)		
1	에코로	친환경복합 단지 조성 에서 착한	—	경서동 830-1	경서동 833-8	2,408	30	1	241	20	경서동 542-52	경서동 833-8	2408	30	1	241	20	도로구간 일부변경	대(주)2-95연결을 위한도 로구간 변경

인전광학사 서구청민나눔센터



○ 도로구간 변경 도면

▷ 변경 전



▷ 변경우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57	14	621.0		A-1	57	14-1	187.1	2획지로 분할
							14-2	433.9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57	14	획지의 분할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도요지로 25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2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9-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3-5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5(경서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5-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7-29(마전동)	2012-05-24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19-1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30(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7-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3번안길 27(불로동)	2008-12-31	검단로76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7-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7번길 21(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13(왕길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1-7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5-21(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2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5(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0-11, 520-12, 520-13, 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60번길 12(석남동)	2009-09-22	염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8-7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03(검암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4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88(경서동)	2010-11-11	청라도라는 지명 반영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3-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22(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57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22(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3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21(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32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48(석남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51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72(석남동)	2015-11-13	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7-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42 (가정동)	2012-10-25	" 봉오재" 란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6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 28-22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39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20번길 13-47 (원창동, 삼성전기테크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심곡동 240-4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 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12	7,346.2	6	2,287.1	3필지로 대지분할 (권장)	2-12	7,346.2	6	765.9	
								6-1	765.3	
								6-2	755.9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12	6 → 6, 6-1, 6-2	획지분할 가능선 변경 및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6. 8. 12.자 시행

2. 주요내용

- 감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 감사 요청 방법
 - 전체 입부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연명부)를 받아 신청
 - 구청장은 감사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실시
-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려 부서 업무 담당자 등
 -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
- 감사 실시 및 처리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건축과장,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전화 560-4737, 팩스 560-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위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서식 제출도 가능합니다.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등)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기간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그 위원)의 업무 등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입주자등 10분의 3이상의 동의) 2. 관련 증빙자료(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47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관리계획 변경(안) 입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m ²)			비고
				당초	증감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1개 시설							
변경	공촌정수장	서구 공촌동 259번지 일원	형질변경	158,184	-	158,184	고도처리 시설 설치
			건축 연면적	17,204	3,858	21,062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m ²)			비고
				당초	증감	변경후	
•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2개 시설							
신설	육군 제3765부대	서구 공촌동 산162번지 일원	형질변경	-	102,383 (8,629)	102,383	병영생활관 등 시설 현대화
			건축 연면적	-	28,008 (4,557)	28,008	
신설	육군 제7570부대	서구 경명대로 809번지 일원	형질변경	-	130,067 (14,518)	130,067	
			건축 연면적	-	25,959 (8,080)	25,959	

※ 위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및 중도위 심의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 군부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0. 1. 28.) 이전에 건축물, 도로 및 군사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축 연면적 및 토지 형질변경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 되지 않은 면적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 도시개발과(☎ 032-560-4682)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 관련서류 : 별도 붙임(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5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위 치	면 적(m ²)	
C-1	62	7	1,523.1		C-1	62	7	316.6	분할 (합병 후 분할)
							8	1,234.3	
							9	723.4	
							10	638.7	
		8	1,389.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